

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 [2003. 12. 15 규칙 제23호]

개정 2005. 1. 21 규칙 제 70호

개정 2005. 4. 22 규칙 제 82호

개정 2005. 10. 19 규칙 제 95호

일부개정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9>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로 상단에 적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21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

부칙(2005. 10. 19 규칙 제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 12. 26>

권한재위임사항

실·과명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재무과	도세징수사무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